

문서번호	행정지원실 - 2490
보존기간	영구
결재일자	2017. 9 .
공개여부	공 개

행정지원팀장	행정지원실장	원장
남궁예진	오 원석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7년 제1차 임시 이사회 회의록



| 재 단 법인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7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개요>

- 일 시 : 2017. 9. 5(화) 10:30 ~ 12:00
 - 장 소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3층 교육장
 - 참석임원 : 13명(이사 11명, 감사 2명)
 재직이사 12명 중 11명 참석
 - 이 사
 - 남궁 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이사장) 참석
 - 윤동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참석
 - 조기성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장 참석
 - 장기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 참석
 - 염운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대리 참석
 - 박세화 전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대리 참석
 - 김민호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 참석
 - 이철이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대표이사 참석
 - 박진규 호서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참석
 - 한정균 전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대리 참석
 - 강인영 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참석 - 감사
 - 이재인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장 참석
 - 노문섭 천안아산공인회계 협의회장 참석
 - 간사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행정지원실장 오원석
- 경과 : 성원보고 ⇒ 개회선언 ⇒ 이사장 인사 ⇒ 업무보고
 ⇒ 보고안건 ⇒ 부의안건 심의·의결 ⇒ 마무리 인사

○ 보고안건

1. 당연직 이사 변경의 건
2. 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의 건
3. 진흥원 사업계약직 고용안정의 건
4. 진흥원 원장 연봉인상의 건

○ 부의안건

1. 2017년 제2차 사업계획변경(안)
2.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3. 정관 개정(안)
4.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5. 인사규정 개정(안)
6. 보수규정 개정(안)
7. 복무규정 개정(안)
8. 사무관리규정 개정(안)
9. 여비 및 실비보상규정 개정(안)
10.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
11. 감사규정 개정(안)
12. 규정제정규정 개정(안)

참석자 소개 및 성원 보고

○ 간사 오원석

- ▶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제1차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임시이사회 사회를 맡은 진흥원 행정지원실장 오원석입니다.
- ▶ 청소년진흥원의 업무에 열정을 가지시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시이사회에 참석해주신 분들께 직원들을 대표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 ▶ 회의에 앞서 오늘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과 감사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사장님을 시작으로 시계 반대방향입니다. 환영의 박수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먼저, 이사장이신 남궁 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사장 : 예, 반갑습니다.)
- ▶ 당연직 이사이신 윤동현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윤동현 이사 : 반갑습니다.)
- ▶ 당연직 이사이신 조기성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기성 이사 : 반갑습니다.)
참고로 9월 1일 신임발령이십니다.
- ▶ 이사이신 손진희 선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을 대리하여 한정균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정균 이사 : 반갑습니다.)
- ▶ 이사이신 김민호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 ▶ 감사이신 노문섭 천안아산공인회계사 협의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노문섭 감사 : 예, 반갑습니다.)
- ▶ 당연직 감사이신 이재인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 ▶ 당연직 이사이신 장기수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장기수 이사 : 반갑습니다.)

- ▶ 이사이신 박진규 호서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진규 이사 : 안녕하십니까?)
 - ▶ 이사이신 이종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님을 대리하여 염운섭 흥성 청소년수련관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염운섭 이사 : 반갑습니다.)
 - ▶ 이사이신 송태화 전 충청남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님을 대리하여 박세화 푸른노무법인 노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 ▶ 이사이신 이철이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철이 이사 : 반갑습니다.)
 - ▶ 장인영이사님은 오시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당연직 이사이신 이영우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님은 업무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
- ▶ 다음은 배석한 청소년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미원 센터장입니다.
 -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박영의 센터장은 청소년 정책 해외 선진지 연수로 현재 영국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
- ▶ 이상으로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 그럼 지금부터 진흥원 정관 제11조 제1항에 의거 남궁 영 이사장님께서 2017년 제1차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의 임시이사회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예, 의석을 우선 정돈을 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단법인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2017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 봉 3타

○ 남궁 영 이사장

- ▶ 여러 이사님들 하여간 날씨도 궂은데 이렇게 다 참여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정확히 맞춰주셔 가지고 역시 이사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이사님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좀 늦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사님들

거의 5분전에 와주신 걸 보면 청소년진흥원에 대한 애정이 그만큼 큰 게 아닌가합니다.

- ▶ 오늘 부의안건은 제일 처음에 업무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 보고안건이 4건이고, 부의안건이 12건이네요. 오늘 내용들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남궁 영 이사장

- ▶ 자, 그러면 먼저 보고안건, 심의안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기수원장님으로부터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듣고, 4건의 보고안건과 12건의 심의안건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 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 원장

- ▶ 장기수 원장입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도 진흥원의 임시이사회를 위해 참석해주신 이사장님, 여러 이사님들과 감사님들께 진흥원 직원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하여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는 기본 현황으로써 자료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청소년진흥원은 2017년 상반기 시·군과 청소년관련 다양한 사업지원 및 협력을 위한 공직자 및 청소년 유관기관 정책워크숍을 통해 일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상담복지사업의 공동추진, 상담복지정책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역량강화 도모 및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9명이 전환되는 기쁨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직원들의 고용구조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직원들의 고용구조와 근무여건이 나아질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한 그 과정에서 항상 힘을 보태주시는 청소년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심리적 청소년 지원체계 보완으로 청소년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도내 학교 밖 진로직업체험 시설을 개소하여 청소년 자립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부터 15쪽까지는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사업의 허브기능 강화와 관련하여 도내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상담복지사업 구현을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시·군상담복지 사업과 학교 밖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지역현안 사업비 지원과 종사자 처우개선비 확보 지원으로 상담복지정책의 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시·군 상담복지센터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지원과 교육상생협력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체험시설 개소 등 광역 사업 진행으로 허브 기능을 더욱 충실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9월 1일부터 3일까지는 학교밖 청소년 모의창업 캠프인 ‘나도 스티브잡스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자립의 ~~여건과~~ 기회를 조치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중심의 종합안전망구축은 고위기청소년 지원 기관간 협력망사업운영과, 신규협약기관 발굴을 통한 네트워크 확대, 그리고 자문 지원기구 운영의 내실화를 통한 시·군상담복지센터 관계자회의와 협력망간의 캠페인을 통해 종합안정망 구축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청소년 상담·보호 지원강화와 관련하여 청소년 문제 발생 위기대응 시스템인 1388청소년전화운영과 긴급구조 및 일시보호소를 운영하여 왔고, 또래상담 사업으로 접근성 있는 상담서비스를 구축하고, 청소년동반자 역량강화 및 준전문가양성에 힘써왔습니다.

1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 정책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청소년의 실태분석과 희망포럼으로

우리 도내에 필요한 청소년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지원사업운영은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의 운영과 2016년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에 전문가를 양성해서 양성된 전문가가 시·군에 사회심리적 외상 관련해서 상담과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을 올해 3년차 사업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에는 시·군에 직접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인터넷치유캠프 관련해서는 올해 도에서 관심과 지원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 남자청소년을 대상으로 치유캠프를 11일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남은 최초로 올해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회를 증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성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성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심각한 위험군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캠프를 통해서도 확인하였기 때문에 여성청소년들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확대해야 되겠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자리였고요, 전국에서 1회에서 2회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칭찬~~ 받은 사업입니다.

14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과 관련해서는 학업복귀 지원을 통해서 올해 검정고시가 충남에서 22명의 아이들이 검정고시에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로체험 센터를 올 한해 마무리해서 학업지원과 아이들의 진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과 충남청소년진흥원과 협업을 통해 올해 안에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청소년 역량개발 및 활동기반 조성입니다.

충남의 청소년활동정책 중심기관의 일환으로 17개 시·군 활동진흥센터 공동연구를 진행, 청소년 활동에 따른 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 지표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지난 5월 24일에는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청소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획단을 구성해서 아이들과 함께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마무리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청소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청소년들이 직접 제언한 청소년참여예산제 정책사업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청소년참여 예산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충청남도 청소년 리더양성 프로젝트 ‘주인공’은 총 14회 5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거리, 소외계층 아이들이 최대한 리더십 교육을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군에, 특히 군 지역의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남의 고유 시책사업으로써 지금 2년차, 내년에 3년차를 맞이하는 저희 자체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더욱 더 의미가 있고, 더 적극적으로 확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3년째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만간에 노동인권센터라든지, 진로체험센터라든지, 참여예산제 참여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도에서 직접 반영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여예산제 관련된 타운홀미팅이 아주 의미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고무적인 것은 천안아산시만 진행했던 것을 지금 대부분의 시에서 자체 청소년 관련된 참여예산제의 운영을 하겠다라고 선발도 하시고 직접 시장·군수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고 있어서 도 차원은 도의 역할, 시·군은 시·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해외교류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청소년팀과 진홍원, 국제통상과의 산재(散在)되어 있던 것을 저희 진홍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제교류사업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관련해서는 충청남도 청소년의 국제교류와 글로벌역량 강화 관련해서 저희 진홍원이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팀과 협의해서 충청남도청에 산재되어 있는 청소년교류 관련 건을 일원화하고, 일원화된 내용 자체를 좀 더 강화하고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내년부터는 좀 더 청소년 국제교류 관련해서 시·군과 협업, 그리고

시·군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시·군과 함께 역할분담을 정확히 해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21쪽부터 23쪽은 청소년성문화센터 관련입니다.

올해 홍성에 3월에 홍성성문화센터를 개소함으로써,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에는 충청남도가 이동형 하나와 거점형 3개소의 성문화센터 관련된 운영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했기 때문에 지금 홍성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있고, 공주·논산이라든지 청양쪽에 세 번째를 개소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청소년들이 시·군과 지역의 환경에 상관없이 청소년 관련된 지원과 정책, 다양한 교육들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지역안배를 더불어서 충남 광역 전체를 저희 진흥원이 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내년이나 후년에는 한군데 더 성문화센터를 개소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반기 사업들은 지금 저희가 보고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마무리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지금 상담과 활동, 성교육 관련된 사업들이 주사업입니다. 법적으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쉼터라든지, 그룹홈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 위기청소년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들을 진흥원에서 역할을 강화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은 심정적이고 ... 못하고 있지만 이후에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진흥원이 갖는 위상을 한 번 더 팀과 협의해서 재정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사장 남궁 영

- ▶ 원장님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도 주시고요.

○ 이사장 남궁 영

- ▶ 원장님, 비정규직 정규직 문제

○ 장기수 원장

- ▶ 예

○ 남궁 영 이사장

▶ 계약직과 정규직 문제, 그거는 저희들이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있거든요. 일의 내용이 프로젝트성으로 어떤 단기간,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업무자체가 그렇다면 그건 그 기간 동안에만 존치가 되는 일이다보니까 할 수 없이 계약직내지는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고, 일의 내용이 연속적이다, 이건 뭐 앞으로 10년, 20년이 가더라도 있어야 될 일이다라고 하면 정규직화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원칙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윤동현(윤동현 이사 : “예”) 정책관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봐서, 업무의 내용을 봐서 그렇게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는 거라면 정규직화하고, 비정규직 계약직 할 수 없, 그럴, 업무의 성격 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면 뭐 그대로 하는거고. 그것을 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장기수 원장

▶ 예. 하나 조금, 말씀 주신 김에 말씀드리면(이사장 : “예”) 지금 저희 정책이 정규직전환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이 아니라 아예 정규직화해서 정원 티오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다른 기관과 다르게 저희는 기간제를 뽑더라도 국가 기준에 의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사업들이 국가에서,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예산을 대부분 매칭으로 주기 때문에 추가 예산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격기준이 똑같고. 그런데 지금은 일정기간이 되면 무기계약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무기계약을 정원내에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이 얼마 남아 있습니다. 예산의 부담이 없고, 자격이 똑같고, 급료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인 사업, 도민을 위한 예산을 대부분 지정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무기계약이라는 딱지를 떼 주시고, 이사회에서 의결만 하면 예산의 부담이 없습니다. 정원만 넓혀주시면. 그래서 아예 정규직화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후에 좀 제안을 드리고, 이후에 직원을 뽑을 때도 엄격하게 기준에 맞춰서 애초에 정규직화 티오로 뽑을 수 있도록 평가를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원 운영하는데 원활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기관과 다르게 저희는 저희 자체로 인원을 뽑는 게 없습니다. 다른 기관은 필요에 의해서 뽑기도 하는데 저희는 사업에 의해서, 국가예산에 의해서. 예를 들자면 지금 부산처럼 그런 사고가 생기면 국가에서

긴급대책으로 계약직으로 사업을 주거든요. 그런 현황조사를 하라고. 그런데 그 사업이 영원히 지속될 사업이지, 일회성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팀하고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한 번 이사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예,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간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보고 하면 돼요, 일. 그 일이 연속적이라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정규직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 사람이 무기계약직화 되냐 안되냐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이 연속적인 업무냐 아니냐, 그것에 맞춰서 하면 된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신가요?

○ 염운섭 이사

-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성문화센터가 홍성에도 있고, 여기 천안에도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기 정규직과 계약직이 좀 다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정규직으로 해야 되는건지?

○ 장기수 원장

- ▶ 저희가 지금 2년이 지나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드렸고요, 홍성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는 올해 선설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는 홍성성문화센터, 천안성문화센터가 저희 진흥원 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하더라도 도의 방침에 의해서 2년이 지나면 이 규율을 없애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은 아직까지, 3월에 개소를 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안되고 있습니다.

○ 염운섭 이사

- ▶ 2년 후에 된다

○ 장기수 원장

- ▶ 네, 그런데 저번 주에 보니까, 우리 도의 지침을 보니까 2년이 아니더라도 9개월 이상 됐으면 조기에 전환하라고 지침을 주셔 가지고

○ 염운섭 이사

- ▶ 꼭 2년이 아니어도

○ 장기수 원장

- ▶ 그전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굳이

2년이라는 규정을 두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조기 전환하라는 대책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2주 전에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사회 때는 종합적으로 더 강화, 내용을 더 포함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염운섭 이사

- ▶ 이사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후에 평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장기수 원장

- ▶ 작년부터 저희는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거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는 특수성을 빼 놓고는 그렇게 했고요,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조금 차이가 있던 게 시간외수당이 좀 차이가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없애 가지고. 본인들이 일할 의지가 있으면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임금 이라든지, 복지의 차별을 전혀 두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에 있는 몇몇 분을 빼 놓고는 그런 부분들을 팀에서 배려해주셔서 개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영 이사 입장)

○ 남궁 영 이사장

- ▶ 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국내외 교류사업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 분 갈 때 여행자보험 다 들죠?

○ 장기수 원장

- ▶ 예, 저희가 그것을 검증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시·군의 사업들이 저희가 다 됐는지 확인하는 기관이라 저희가 안전교육, 요즘은 뭐 성교육까지 다양한 교육들을 다 마치고, 사전교육 하고,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네, 그런 안전문제, 혹시나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 그런 부분을 거기까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야유회성 해외연수가 되지 않도록 그걸 꼭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늘어날수록 그 사고의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늘어날수록 외부에서 볼 때 약간 외유성으로 비춰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 네, 또 다른 이사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 ▶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다음 보고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고안건

○ 남궁 영 이사장

- ▶ 이어서 보고안건에 대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 ▶ 안건은, 당연직 이사 변경의 건, 진흥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의 건, 진흥원 사업계약직 고용안정의 건, 진흥원 원장 연봉인상의 건 등 4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 봉 3타

○ 남궁 영 이사장

- ▶ 간사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 금일 이사회에 보고드릴 내용은 모두 4건입니다.
먼저 27쪽입니다.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과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교육청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진흥원 정관 제8조에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6월 23일과 7월 1일, 9월 1일에 내부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행정지원실에서는 이영우이사님과 윤동현이사님은 7월 11일에 이사변경 등기를 완료했고요, 교육청 당연직 이사변경 등기는 민법 제52조에 따라서 9월 21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부터 30쪽입니다.

진흥원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혁신방안 모색 · 중장기 미션 · 비전 · 추진전략 설정을 통한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의 수립, 대외적 환경변화와 내부 환경진단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기관의 운영방향 설정을 위해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하여 용역을 진행한 결과 미션 · 비전 · 가치 · 목표 · 전략을 재정립했고요, 이사님들께서도 제안하셨던 진흥원 이전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진흥원 부서장격인 행정지원실장, 상담복지센터장, 활동진흥센터장과 계약직 직원들의 고용안정 방안과 조직 혁신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이사회에서 행정지원실의 증원 및 고용안정화 방안에 대하여 규정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과 관련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진흥원의 산하 기관들까지 포함하여 이전할 경우 약 700평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차보증금을 포함하여 17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청소년팀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으로 갈음드립니다.

31쪽입니다.

진흥원에는 8월 31일 현재 33명의 계약직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근무 중인 9명에 대하여 도청 혁신관리담당관실과 협의를 통해 금년 하반기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청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경우 정규직 채용,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용안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충남 출자·출연기관장의 경우 연봉기준이 매년 7월에 마련됩니다. 진흥원 원장은 타 광역 자치단체 유사업무 기관장의 연봉과 비교하여 전국 평균 연봉정도를 연봉 상한액으로 제시 받았고,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적용될 연봉으로 기준액 7,700만 7천원보다 약 120만원 정도 상향 조정해서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년도 연봉기준액이었던 7,210만원보다 1.9% 상향조정했던 것에 비해 낮은 것으로써 1.5% 정도만 조정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료집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자, 지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도 혹시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그 이번에 우리 진흥원 이전 관련해서 지난번에 아산시장, 천안시장이 얘기한 천안아산역 KTX역 앞에 그 무슨 복합센터 있잖아요? 그때 그걸 내놓니 마니 했었는데, 양 시장이, 김연의원이 얘기하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됐어요?

○ 장기수 원장

- ▶ 천안시에서 최종적으로, 죄송하지만 천안시에서 부를 업무요청해왔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왜, 왜 그렇지?

○ 장기수 원장

▶ 그러니까 천안시 입장에서도 일단은 공간자체도 목적에 맞지 않고, 그 지역에 천안시 자체적으로 청소년관련해서 시설을 좀 계획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아산시에서 이제 직접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제가 공문으로 의견을 주십사 했는데 아산시에서 천안시에 공문을 보냈는데 천안시에서는 불가하다고 회신을 주셔서 안 자체를 김연의원님에게 살짝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그 안이 백지화 됐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그게 천안시거였던 건가요?

○ 장기수 원장

▶ 아니, 천안 아산이 복합문화센터를 상생센터..

○ 남궁 영 이사장

▶ 예, 같이, 같이 보유한거죠?

○ 장기수 원장

▶ 예, 그래서 두 시가 동의해야 가능한 거였고, 그래서 김연의원님이 제안을 하셔서 두 시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했는데 도서관리도 그렇고 몇 가지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각보다 저희가 들어가려면 증축이 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증축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등 몇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 윤동현 이사

▶ 그저께도 담당 국장하고 과장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그쪽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다 부정적입니다. 여러 차례 문의를 물어봤는데

○ 남궁 영 이사장

▶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 천안시내에 잘 있는데 왜 애써 가려고 하느냐?

○ 윤동현 이사

▶ 아니, 아닙니다. 시설로 이전하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문화센터로

○ 남궁 영 이사장

▶ 그럼요, 어차피 광범위하게 한 번 의견을 조회를 해 보세요. 시·군에 대해서요. 그렇게 할 계획인건가요?

○ 장기수 원장

- ▶ 예, 저희가 아마 팀장님이 업무보고를 하셨을텐데 저희가 이제 이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한 이후에 관련된 추진단, 추진단을 구성하고, 시·군에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추진단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장소는 결정하고, 장소결정 과정에서는 추진단의 의견을 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11월까지 저희가 추진단을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예,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에서는 그렇게 건물을 내 놓으면서 유치의사가 있는 데가 있을거에요.

○ 윤동현 이사

- ▶ 예, 두 군데, 두 군데가

○ 남궁 영 이사장

- ▶ 응, 그러니까 천안시 입장에서 그런, 물론 수요가 여기가 많기는 하지만 천안시에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면(웃음) 그렇다면 뭐 대우해주는 데로 가야지.

○ 장기수 원장

- ▶ (웃음)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저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윤동현 이사

- ▶ 아, 예. 제가 궁금한 게, 성문화센터도 한꺼번에 이전하실거예요, 원장님?

○ 장기수 원장

- ▶ 예?

○ 윤동현 이사

- ▶ 성문화센터

○ 장기수 원장

- ▶ 예

○ 윤동현 이사

- ▶ 한꺼번에 이전? 여기 예산을 보면 리모델링 비용이 3억이 들어져 있는데, 천안성문화센터... 일괄이전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그런다면 저희들이 상의를 하기는 그에 대한 확정이 안 된 상태라, 단계적으로 할 거냐, 일괄적으로 할 거냐

○ 장기수 원장

- ▶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금 천안성문센터는 법적으로 천안·아산권에 있어야 되거든요.

○ 윤동현 이사

- ▶ 그러니까요.

○ 장기수 원장

- ▶ 그래서 아산에서 혹시라도 저희가 부지선정을 일단, 유치한다고 생각하기에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 윤동현 이사

- ▶ 예, 그러니까요

○ 장기수 원장

- ▶ 각자 아산에서 이것까지 같이 유치제안서를 내면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홍성으로 가면 홍성에 있기 때문에 빠져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천안시는 성문화센터를 짓기는 것은 또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웃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치추진단이 구성이 되면 1안, 2안, 3안 해서 일괄 이전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안성문화센터가 지금 노후가 심각하고

○ 윤동현 이사

- ▶ 심각하죠

○ 장기수 원장

- ▶ 예, 그리고 위치가 심각해서 뭐

○ 윤동현 이사

- ▶ 공간도 협소하고, 시설도 협소하고, 장소도 협소한거는 다 아는데 일단, 일괄 이전을 한다고 하실 때 있을 수 있는 부작용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 장기수 원장

- ▶ 예, 일괄 이전할 수 있는 1안이 있고요, 아니면 천안내에서 적정한 공간을, 그것 또한 천안시에서 그동안 저희 도비로 했었는데 **최소한** 공간만큼은 천안시에서, 이건 90%가 천안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것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천안시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건이 맞지 않으면 그 장소에서는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윤동현 이사

- ▶ 예, 어찌됐건 여론도 있고 하니까 단계를 좀, 방법을 여러 가지로 해서 최적의 방법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장기수 원장

- ▶ 예, 충분하게 팀하고 협의해서 잡음이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잘 하겠습니다.

○ 윤동현 이사

- ▶ 예

○ 남궁 영 이사장

- ▶ 그러니까 미리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요즘은 뭐 무조건 투명한게 최고니까. 미리 공개하고

○ 장기수 원장

- ▶ 예

○ 윤동현 이사

- ▶ 그렇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그거에 맞춰서 입지를 선정하고, 원칙을 분명히 세워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 박진규 이사

- ▶ 제가 한 말씀



○ 남궁 영 이사장

- ▶ 예

○ 박진규 이사

- ▶ 진흥원이 사실은 지금 예산도 많이 늘고, 직원이 많이 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문제가 큰 거 같아요. 그런데 지역을 넘어선다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필요성과 그 어떤 현재의 문제의 심각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도의 10년 후에 진흥원의 역할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테스크포스가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잘 검토하시겠지만 명분과 실리가 잘 조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명분이라는 것은 예컨대 도청이 가까이 있다고 도청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명분일 수 있겠죠? 역사성을 강조한 역사에 지어진 것을 통해서 보여준다든가. 그런데 시의적인 면에서 상당히 복잡한 면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도 단위의 우리가

기관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직접 대하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청소년들의 수요가 있어야 이게 살지, 청소년들하고 멀어지면 이건 청소년 관련기관은 상당히 잘못하면 어른들만의 단체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의 인구가 가장 많을 수 있는, 그런 곳을 고려해서, 아마 지자체중에는 유치해가지고 지역에 뭐 하나 있는 곳으로 할 수 있을거에요. 우리가 사실은 인구가 줄어드는 데가 공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 보다는 오히려 접근성, 형평성, 이용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고려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게 있잖아요. 사실은 알다시피 이제는 청소년 수가 엄청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고 있을 때 지금 60만, 40만, 30만까지 갔는데 내년에 할 때에 이 활동도 지금의 백화점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진흥원이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할 때에 그 타겟집단이 누구냐,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이전과 공간 확보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제가 진흥원에 오셔서 많이 수고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요것은 단순히 유치의사를 한다고 하는 그 기관과, 지자체와 하기 보다도 이 진흥원의 입장도 많이 반영되면서 이게 추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이사님 말씀에 공감이고,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 기준을 미리 설정을 잘 해서 뭐를 몇 점 주고, 뭐를 몇 점 주고, 뭐를 해서 하여간 그 기준을 미리 잘 조정하고, 그걸 다 공개하는거야, 미리. 다 공개를 해서 유치신청을 받을 건 받고, 해 가지고 그 공개된 기준 하에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나중에 결정을 하는 그런 그 과정을 명확히 설정을 미리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장기수 원장

▶ 예, 그러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예, 다른 이사님들 혹시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노문섭 감사

▶ 충청남도가 지역이 꽤 넓은데 청소년진흥원, 성문화센터는 뭐 천안에도 있고 홍성에도 있지만 진흥원 자체로 분원 개념으로 이렇게 넓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고려는 안해보셨는지요?

○ 장기수 원장

▶ 저희가 이제 도기관에서 유일하게 시·군에 시·군 상담복지센터가 있고 시·군 수련관,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저희가 이 업무라든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분원개념이 아니라 시·군에 역할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역할을 제대로 해서 지금 2~3년차 계속 직접사업을 이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관하는 과정에서 사업은 이관하고, 인건비나 예산이관을 적극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정책은 그렇습니다. 진흥원은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강화하고, 시·군 사업은 수련관, 수련원, 상담복지센터, 꿈드림센터의 역할을 좀 더 해주는, 그래서 15개 시·군의 안정적인 청소년의 성장과 상담네트워크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는 시·군의 조직이기 때문에 분원보다는 역할을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더 질문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 일동

▶ 없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없으시면, 일단 보고는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의·의결안건

○ 남궁 영 이사장

▶ 그 다음에 심의안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해야 될 안건으로는 2017년 제2차 사업계획 변경(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정관 개정(안),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인사개정(안), 보수개정(안), 복무개정(안), 사무관리규정(안), 여비 및 실비보상규정(안), 이사회 운영규정(안), 감사규정 개정(안), 또 규정제정규정 개정(안) 등 총 12건입니다.

▶ 일단은 부의하고 쭉 심의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12의 안건을 일괄 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1부의안건: 2017년 제2차 사업계획 변경(안)

○ 남궁 영 이사장

▶ 먼저 첫 번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자료집 35쪽입니다.

충청남도와 도 교육청 간 교육상생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진로직업체험 시설 구축에 따른 사업 편성과 충청남도 추진 해외교류사업 수탁 및 신규사업 편성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의 경우 현재 본예산에 2억원이 편성돼 있으며 도교육청 보조금 2억원과 시·군보조금 2억원, 또는 설치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을 통해 충남형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직업체험 플랫폼 구성으로 지역사회와 청소년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신규사업 중 충청남도와 추진하는 해외교류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설명을 생략 드리겠고요, 숲체험 등산 아카데미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연과 숲이 인간에게 주는 중요성을 함께 공유하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호연지기를 키워 건강한 정신력 및 애국심 함양을 위해 충청남도 내 중·고등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사단법인 한국산악회 충남지부 청소년위원회에 위탁하여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진흥원에서 5백만원을 부담해서 총 15,000천원입니다. 이상 사업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자, 의견 있으시면 주시죠?

○ 박진규 이사

▶ 없습니다.

제2부의안건 : 2017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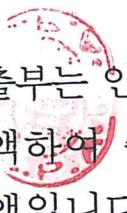
○ 남궁 영 이사장

▶ 그러면 두 번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37쪽과 맨 뒤쪽에 있는 92쪽부터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해 주십시오. 국도비 교부내역 변동에 따른 차액예산 반영, 시·군비 보조금 예산발생에 따른 신규예산 반영, 타기관사업 수익자지원금 예산변동에 따른 조정예산 반영과 반납금 조정 등의 이유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부는 국도비보조금 30억 3,162만 9천원에서 30억 7,512만 9천원으로 4,350만원 증액, 시·군비보조금 2억 1,900만원 증액, 타기관지원사업으로 2억 9,026만 8천원에서 5억 1,947만 4천원으로 2억 2,920만 6천원 증액, 반납금은 2,788만 8천원에서 3,338만 8천원으로 550만원 증액입니다.

 세출부는 인건비 중 기본급과 연금부담금 등은 감액이며, 수당 및 성과급 등을 증액하여 총 16억 5,723만 3천원에서 16억 5,843만 3천원으로 120만원 증액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는 감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증액으로써 총 2억 5,720만 5천원에서 2억 5,690만 5천원으로 30만원 감액입니다. 기타 해외봉사사업 지원은 90만원 감액이며,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 운영, 천안성문화센터의 신고의무자교육, 수의자사업, 청소년미디어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은 총 1,270만 6천원 증액입니다.

반납금의 조정에 따라 세입부와 동일하게 2,788만 8천원에서 3,338만 8천원으로 550만원 증액이며, 신규사업은 진로직업체험시설구축 시·군지원비 2억원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에 4억 7,90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증감내역 및 세입세출변경(안)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흥원 운영에 꼭 필요한 내용이니만큼 잘 검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이 추경(안)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철이 이사

▶ 신규사업으로 이 모두 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하는거예요? 신규사업이?
왜 진흥원이 저 이사로 있으면서 느끼기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이 있으면 질이 나와야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만 그만한 이게 복지시설
인지, 진흥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인지, 때로는 저희들이 헛갈릴
때가 있어요. 진흥원이면 진흥원의 역할을 해 줘야지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많이 하면 직원들 견디나요?

○ 간사 오원석

▶ 신규사업 관련해서는 활동진흥센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배석을
했는데 활동진흥센터 주무팀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장기수 이사

▶ 제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센터장님이 지금 출장중이시라. 우리 이철이
이사님이 말씀, 굉장히 직원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3년차 되면서 사업예산이, 사업예산이 활동에서 지금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해서 사업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저희가 대부분 사업은 사실 국가에서 지정되는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저희~~
권한이 있는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리더십하고, 저희가 이제 2~3년차
참여 관련된 청소년 정책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거하고, 국제교류관련해서는 몇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국제통상과에서 우리 지사님이나, 도에서 가다보면 교류사업쪽에 청소년이
꼭 끼시거든요. 그것을 국제통상과에서 진행하던 것을 청소년 관련해서는
전문가인 진흥원에 내려 보내서 사업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 이철이 이사님 말씀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올해 이사회 안건에도 있지만은, 저희가,
이 이후의 안건을 보시면 진흥원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운영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양 센터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행정지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양 센터의 티오를 사실 깎아 먹은거죠. 이것도 속된 표현으로 하면.
올해 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협의해주시고, 또 사실 국가에서 굉장히
지적사항이었거든요. 양쪽 티, 정원을 갖다가 지원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올해 요 안건 중에서 센터에서 파견된 직원들을 센터로 돌려보내는 안건이 있고요, 그 후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리더십이라든지, 관련해서는 계약직이지만 정원을 두 명 정도 확보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일정 부분을 좀 더 내년에는 유연하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과정들을 이 이후에 담아오겠습니다. 그래서 격려해주시고, 검토해주셔서 감사하고,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반해서 그동안 인력이 없었는데 자체 활용되는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내년에 활동에는 두 명 정도의 인력이 확보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다른 의견들 말씀 주시죠.

○ 노문섭 감사

- ▶ 진로직업체험시설 구축이 분당에 있는 잡월드 이런 것처럼 직업체험하는 건가요?

○ 장기수 이사

- ▶ 사실은 저희 꿈은 잡월드처럼 꿈을 꿨었는데 예산이, 잡월드랑 이런 기관은 한 200억 됩니다. 논의과정에서 그럼 충남에 직업체험시설이 없으니까 시범사업이라도 좀, 시범사업 중심으로 좀 규모있게 해보자. 그대신 요즘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학교 밖 청소년중심의 진로체험센터를 하되, 꼭 그 친구들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친구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하자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그것도 사실은 장소이동과 맞물려서 아까 성문화센터랑 같이 갈 건지, 별도로 갈 건지, 좀 저희가 장소가 복잡합니다. 근데 올해 첫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광역에서 한 2~3 군데 정도가 이런 작은 규모의 진로직업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직원 채용해서 지금 직원들 교육하고 있고, 장소가 확정이 되면 바로 인테리어 들어가고, 지금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 사업도 올해 12월 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잡월드처럼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 노문섭 감사

- ▶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 장기수 이사

- ▶ 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이 함께 해 주셔서 저희가 교육청 30%, 저희 도 30%, 시·군에서, 이걸 유치하겠다는 시·군에서 30%. 이렇게 3 3 3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자, 뭐 다른 질문 없으시죠?

○ 일동

- ▶ 없습니다.

제3부의안건 : 정관 개정(안)

○ 남궁 영 이사장

- ▶ 없으시면 원안 가결을 하고, 다음 세 번째로 정관 개정(안)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정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던가.

○ 간사 오원석

- ▶ 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은 42쪽입니다.

정관 중 총 2개 조항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건데요, 신구대비표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진흥원이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해서 각 센터별로 분리했습니다. 5항에 있는 내용은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의 균형있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사업 지원, 이렇게 변경을 제안드립니다. 진흥원이 현재 지금 수탁하고 있는 성문화센터의 사업내용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제32조입니다. 정관에 명시된 원장의 자격요건, 근무기준 등을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라는 내용을 이미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임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네,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 ▶ 내용적으로 봤을 때 갈라진 것이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냥 표현상의 문제인건가?

○ 장기수 이사

- ▶ 성문화센터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요, 성문화센터 규정을 하나 신설한 것입니다. 저희가 성문화센터를 위탁해서 위탁개념보다 실제로 거의 직영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관에 성문화센터 관련된 조항이 없어서 삽입을 하는 것입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원장 추천위원회 운영규정을 하나 만드는 건가요?

○ 간사 오원석

- ▶ 아닙니다. 기존에 있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있나요?

○ 간사 오원석

- ▶ 네

○ 남궁 영 이사장

- ▶ 자 다른, 예.

○ 박진규 이사

- ▶ 그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거예, 안에 좋은 안들이 제시된 것 같습니다. 원장님 일에 대한 것이라든가, 그리고 4조의 5와 같은 거, 좀 더 청소년의 균형있는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사업지원으로. 근데, 그 4조 2항에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활동진흥사업을 활동을 빼고 복지사업, 복지보호사업을 하자는 그런 뜻인가요?

○ 간사 오원석

- ▶ 지금 기존에 4조 2항을 보시면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 및 활동진흥사업, 두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에 관한 영역과 활동에 관한 내용을 각각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 염운섭 이사

- ▶ 이게 그러니까 상담하고, 상담복지하고 활동하고를 완전히 이제

○ 장기수 이사

- ▶ 뚫어있던 것을 하나로 분리했습니다.

○ 염운섭 이사

- ▶ 이쪽에 있고, 내용이 이쪽에도 있고 헷갈려서 나눈 것 같아요. 아예.

- 장기수 이사
 - ▶ 예
- 강인영 이사
 - ▶ 원장추천회 운영규정은 어떻게 정하게 돼 있습니까?
- 간사 오원석
 - ▶ 지금 현재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장추천위원회를 도와 의회와 진흥원에서 추천해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 강인영 이사
 - ▶ 별도의 이사회 의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임명절차가 있습니까?
- 간사 오원석
 - ▶ 개정 절차가 있습니다.
- 강인영 이사
 - ▶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사안이 아니고요?
- 장기수 이사
 - ▶ 예
- 간사 오원석
 - ▶ 운영규정, 그 원장추천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이사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회에 속한 규정이기 때문에, 개정을 하고 원장님의 공석이 되거나 이럴 경우에, 새로 임면을 해야 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를 통해서 임면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장기수 이사
 - ▶ 충청남도 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통해서요, 산하기관 원장 관련된 임명의 기준이라든지 참여위원수를 구체적으로 확정을 해서 그 관련해서 모든 산하기관이 이제 원장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거기 이제 의회 추천이라든지 이런 신설 사항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해서 객관적으로 좀 더 기관장 추천에 대한 룰을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를 취하는 겁니다.
- 강인영 이사
 - ▶ 조례로 정하는 것은 틀을 잡아주는데, 그럼 최종적인 결정은 이사회에서 하는?

○ 장기수 이사

- ▶ 그러니까 원장추천위에서 하고 공개모집을 다 하게 돼 있고요, 공개모집해서 공개모집결과를 이사회에서 인준을 하게 되는 형식인거죠

○ 강인영 이사

- ▶ 운영규정의 내용을 바꾸는 것은, 틀을 바꾸는 것은 그 조례로 하고 이사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 장기수 이사

- ▶ 네, 그렇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운영규정, 그 원장추천위원회 운영규정도 규정이니까 우리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야 되는거죠?

○ 간사 오원석

- ▶ 네, 맞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이사장도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되면 우리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그런거죠?

○ 간사 오원석

- ▶ 네, 맞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네,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일동

- ▶ 네

○ 남궁 영 이사장

- ▶ 자, 그럼 이것도 원안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4부의안건 :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

○ 남궁 영 이사장

- ▶ 자, 그러면 다음에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 네, 직제 및, 제4부의안건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입니다. 보고안건으로

보고 드린 계약직 직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정원의 변경입니다. 행정지원실의 인력을 현행 원장 포함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직제 및 직무에 맞는 내용으로의 명칭 변경이 있고, 분장사무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 누락 또는 일몰된 사업의 삭제를 포함한 변경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 46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 남궁 영 이사장

- ▶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 ▶ 이사님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갈까요?

○ 일동

- ▶ 예

○ 남궁 영 이사장

- ▶ 자, 그럼 이것도 원안으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5부의안건 : 인사원규정 개정(안)

○ 남궁 영 이사장

- ▶ 다음, 인사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 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에서 61쪽은 인사규정 개정(안)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역시 2004년 7월부터 근로기준법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과 관계법령,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표준취업규칙에 맞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개채용과 관련된 내용,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며 징계양정기준 중 해석이 불명확한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라는 항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신구대비표 중 핵심내용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공개채용 중 재공고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50쪽. 수습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수습기간 중 급여 지급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근로계약의 체결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며, 팀장 승진의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무원 징계에는 파면과 해임이 있으나 근로기준법에는 해고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고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청소년관련 전문가를 포함한 5~7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과반수로 하였습니다. 인사위원장은 기존 이사장님에서 원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인사위원회의 기능 중 서류전형심사에 국한되는 것에서 신규 임용자의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까지 확대하였으며, 직원의 승진심의도 진행하게 됩니다.

53쪽. 인사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휴직관련 조항은 전면개정이며,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등은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는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내용을 전면개정하면서 중복되는 내용들은 삭제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정년퇴직의 경우 현행 매월 말일에 퇴직하는 것을 6개월 단위로 조정하였고, 행정지원실장, 상담복지센터장, 활동진흥센터장의 경우 2년 임기, 2회 연임 가능에서 연임 횟수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진흥원 중장기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통해서도 안정적인 리더십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이나 휴직 후 복직을 신청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직권면직 사항에서 삭제하고자 하며, 현행 진흥원의 업무 상 국외 파견하는 경우는 없기에 불필요한 조항이라 생각되어 삭제하고자 합니다.

58쪽부터 61쪽까지 있는 근로계약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준용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질문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이사

▶ 네, 전후 표 52쪽에 보면 26조의5 해고예고의 예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3호에 월급제 직원으로서 6개월이 되지 아니한 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에서 위헌판결이 나면서 효력이 없습니다. 이건 삭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간사 오원석

▶ 그럼 아직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안된 겁니까?

○ 김민호 이사

▶ 위헌판결이 나서 처음부터 무효가 됐어요.

○ 장기수 이사

▶ 하나 사전에 살짝 말씀드리면, 실·센터장의 연임제한규정을 풀었는데요, 현재 계신 분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센터장님들은 기준 규정대로 가고, 새롭게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뭐 의회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2년마다 그전에 실·센터장을 바꾸다보니까 리더십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좀 어렵다, 그래서 연임규정은 2년마다 평가는 받되, 연임의 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그리고 원장은 그대로 2년 임기에 1회 연임하는 것으로 그대로 됐습니다. 어쨌건 원장이나 책임자는 지휘부의 의지에 의해서,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또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어서. 다만 실·센터장이 너무 자주 바뀌는 그런, 현재 조직운영이 안정되지 못하다 해서 평가는 2년마다 하되, 2회 연임 제한이 있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지역사회와 의회의 요구사항도 있었고, 지휘부에서도 좀 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소급적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염운섭 이사

▶ 다음부터, 다음부터 적용?

○ 장기수 이사

▶ 네

○ 박세화 이사

▶ 그리고 50쪽이요, 50쪽, 가운데 13조의2 4항, 4항도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규정을 직원에게 제시함

으로써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거기 그 강행규정, 그 말도 있고 해서, 삭제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1항에는 또 이렇게 교부를 한다는 취지로 했는데 1항이랑도 모순된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삭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간사 오원석

▶ 네 알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그러니까 13조의 2에 1항?

○ 박세화 이사

▶ 4항이요

○ 남궁 영 이사장

▶ 4항이요? 4항은 삭제해야 된다고요?

○ 박세화 이사

▶ 네

○ 남궁 영 이사장

▶ 아까 26조의 5에 4항도 삭제고요?

○ 김민호 이사

▶ 예

○ 남궁 영 이사장

▶ 이사님들 이건 한 번씩 다 보고 오신거죠? 지금, 내용이 많아가지고 이사님들이 먼저 안보셨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보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진규 이사

▶ 지금 대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동 : 웃음)

○ 남궁 영 이사장

▶ 예,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주시고요

○ 박세화 이사

▶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크게 흠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임금의 계산방법 같은 것을 누락해서 그런 것을 좀 추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간사 오원석

▶ 그럼 이사님, 임금의 구성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세화 이사

- ▶ 네, 그 근로계약서 임금의 구성 부분에, 임금의 구성, 구성 요소, 계산방법, 예를 들어 뭐 대략 들어가 있는데 연장이나 야간 같은 데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그런 계산방법을 반드시 법에서 넣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런 것이 빠지면 안되거든요.

그리고 이건 의견인데요, 표준근로계약서 7조에 보면, 7조의 2항에 보면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명한, 발명 및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진흥원이 승계한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문구만 있다고 본다면 승계란 회사를 떠났을 때 그 어떤 권리를 진흥원이 가져온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직원으로 있을 때는 자기 것이고, 떠났을 때는 우리가 승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승계대신 귀속이라든가 그런 표현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박이사님, 나중에 세밀하게 지도를 한 번 해 주셔야 되겠네요?

○ 박세화 이사

- ▶ 네, 알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경우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냥 읽어가지고는 뭐, 그냥 안 보일 수 있겠어요. 전문가분들을 모신 이유도 그런 거니까?

○ 윤동현 이사

- ▶ 정직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를 감하게 돼 있는데 아예 안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 간사 오원석

- ▶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노동무임금의 기준을

○ 윤동현 이사

- ▶ 아니, 근로기준법 관련해서 개정하는 건 알겠는데 공무원규정에는

○ 간사 오원석

- ▶ 공무원규정에는 3분의 1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총 세 분의 노무사로부터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직 부분은 무노동 무임금이 맞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 윤동현 이사

- ▶ 예, 알겠습니다.

○ 장기수 이사

▶ 직원들은 좀 서운해 했습니다.

(일동 : 웃음)

○ 윤동현 이사

▶ 예, 그래서 제가 직원들이 서운해 했을 것 같아서

○ 장기수 이사

▶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공무원법을 따르는 게 있고,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유불리를 떠나서,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우리가 유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준의 틀은 좀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사전에 물어보고 했습니다. 저항은 있었지만 양해는 제가 구했습니다.(웃음)

○ 남궁 영 이사장

▶ 정직을 당하지 말아야죠.

○ 장기수 이사

▶ (웃음) 그렇죠.

○ 남궁 영 이사장

▶ 자, 혹시 다른 것 고쳐야 될 내용 있으신가요? 지금 그 이사님들 중에서 의견을 주신 게 50페이지 13조의2에 4항을 삭제하고, 52페이지 26조의5에 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 자, ~~요거~~ 반영을 해서 수정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동 : 예)

▶ 다들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아까 근로계약서 이 부분이랑 우리 저 실무선에서 우리 박이사님한테 지도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고쳐야 될 사항 있으면 다음 이사회에서 고치는 것으로 합시다.

제6부의안건 : 보수규정 개정(안)

○ 남궁 영 이사장

▶ 자 그러면 다음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62쪽부터 71쪽에 있는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맞는 내용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흥원에서 적용하고 있지 않은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63쪽입니다. 계약직 직원 중 9명을 하반기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추가로 전환하더라도 예산의 한계로 인하여 충청남도 무기계약직 임금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64쪽 제10조 산정방법입니다. 현행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그리고 공무원 보수의 경우 원단위는 절사하고 있는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최저임금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원단위는 절상하여 계산하고자 합니다. 절상한다고 하더라도 연간 10만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제11조입니다. 성과급의 10%를 연봉에 반영하여 타 기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급여의 차를 일부라도 줄이고자 2015년 12월 이사회에서 조항을 개정했었는데요,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충청남도 산하기관 평균 임금 70% 미만 기관의 경우 지금 내년도 1.4%의 추가 인상요인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65쪽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내용인데, 이는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초과근무의 경우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결재권자가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가족수당의 경우 신청일이 아닌 사유가 발생한 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휴직이나 휴가로 월 7일 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용어의 변경도 있습니다. 퇴직급여금을 퇴직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68쪽입니다. 팀장 및 팀원의 연봉한계액을 현행 2,240만원에서 2,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2014년 개정 후 3년 만에 인상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예, 혹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호 이사

- ▶ 예, 65쪽에 12조에 보수의 감액의 규정을 보면 기존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 같아요. 직원들 입장에서. 이럴 때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건 거친 상황인가요?

○ 간사 오원석

▶ 규정 개정을 하면서 실·센터장회의하고, 팀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무팀장 회의를, 총 4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기존 진흥원에 있는 규정이 휴가일수를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도 임금의 3분의 1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감액하는 규정이고, 실질적으로 큰 틀의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주무팀장회의, 전체 직원들에게 이 내용을 공지를 했었기 때문에 의견의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민호 이사

▶ 공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불이익하게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관리 감독자가 배제된 상태에서 그 기관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동의서에 동의여부를 표시를 해서 그것을 노동부에 나중에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혹시 절차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아직 그렇게까지 절차를 거치신 게 아니라면 향후에 고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장기수 이사

▶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몇 가지 이사님들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내부 전체, 팀, 팀장님들하고 회의를 했고, 어제 직원, 평직원들하고 실장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눠서 의견수렴해서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몇 가지 조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큰 틀에서 근로기준법 중심으로 큰 틀을 잡자라는 동의를 해서.

또 하나는 그 전에 저희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좀 느슨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신 절차도 필요하면 저희가 이제 노조나 협의회가 없기 때문에 평직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하고 직접 해결하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의견수렴을 해서 지금 1차 의견을 그것으로 반영을 했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 번 더하거나 제안을 해서 법적근거를 주면 다음 이사회 때 개정(안)을 제안하겠다고 했고, 필요하면 절차를 밟겠다고도 했습니다. 동의절차를.

○ 남궁 영 이사장

▶ 네, 다음 혹시 더 질문 없으신가요?

- ▶ 원장님, 지금 여러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많은데 이게 그러니까 한 번 일괄로 쪽 보신건가요?
- 장기수 이사
 - ▶ 예
- 남궁 영 이사장
 - ▶ 그래서 지금 개정(안)을 내신 건가요?
- 장기수 이사
 - ▶ 예, 저희가 이 규정이라는 것이 워낙 진흥원 설립 이후부터 상황이 좋지 않아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안 맞는게 많고. 말씀드렸듯이 어떤 것은 공무원관련된 것, 어떤 것은 노동법 관련된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법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권리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 조금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합리하다기 보다는 직원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불리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초안을 마련하고, 팀과 협의하고, 노무사님들한테 한 번 더 검수를 받아서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네, ~~수고하셨네요~~. 다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의결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7부의안건 : 복무규정 개정(안)

- 남궁 영 이사장
 - ▶ 다음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세요.
- 간사 오원석
 - ▶ 네, 72쪽 복무규정 개정(안)입니다.
직원의 정치운동 금지에 대한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개정이 있습니다.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당직근무자 및 휴일근무자에 대하여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거나 대체휴무를 사용하되 45일 안에 할 수 있도록 적시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초과근무나 휴일근무는 노사 합의에 의해 시행할 수 있으므로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도 근무시간외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에서 명시한 외부장의 신고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진흥원 규정 중 휴일근무에 대한 내용은 있으나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이 규정에 누락되어 신설하고자 합니다. 1주 동안 만근한 직원에 대한 유급휴일 부여, 근로자의 날,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날, 진흥원 설립등기일을 휴일로 하고자 합니다. 설립일은 현재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 중 많은 기관들이 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현행 3개월차 미만에게는 휴가가 없으나 1개월을 만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반영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맞게 개정할 경우 5내지 11년차 직원의 경우 휴가일수가 줄어들 수 있으나, 4년 미만의 직원에게는 최고 6일까지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 규정은 21일까지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이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25일까지 가능합니다. 무기계약의 전환, 장기근속직원이 늘어나는 진흥원의 상황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휴가를 금전적으로 다 보상받지 못하거나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은 다음해에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는 내용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적극적인 휴가사용촉진을 통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경조사 휴가의 경우 형제·자매의 결혼 시 1일의 휴가를 삭제하는 대신 애사의 경우 1일씩을 늘리는 개정(안)입니다.

병가의 경우 업무외 질병의 경우 휴가를 사용할 수는 있으나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 ▶ 77쪽부터 있는 임산부의 보호,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시간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규정화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자, 요거에 대해서도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세화 이사

- ▶ 72쪽에 제5조의1 정치운동의 금지, 이게 제가 볼 때에는 법에 근거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헌법재판소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아닌 직원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이게 전반적인 판례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 표제도 선거운동의 금지, 선거운동의 금지라고 했는데 정치운동의 금지라고 해서 오히려 기본권을 더 제약했던, 폭넓게 제약했던 그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반드시 넣으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 법령에 반하여, 아니면 직권을 남용하여 그런 어떠한, 해석이나 법 위반을 하지 말자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면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호 이사

- ▶ 제가 보기에도 저 헌법상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구요, 공무원이라든가 법률로 제한하는 대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기존에, 개정 전의 조항도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남궁 영 이사장

- ▶ 어떻게?

○ 박세화 이사

- ▶ 둘 다 삭제하는 것이.

○ 김민호 이사

- ▶ 예, 제 생각에

○ 박세화 이사

- ▶ 더군다나 이게 예를 들어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공천권에 관여를 하실 일도 별로 없으실 것 같고, 영향력을 발휘하실 일도 없으실 것 같은데 이건 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 장기수 이사

- ▶ 조항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산하기관들끼리 이런 시기 때 지침들이 조심해 달라는거하고. 또 하나는 18세 선거운동, 투표권부여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좀 논란이.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정치운동을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기관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건데 이게 엄청 과하게 한다면 폐지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그런 예외적인 상황이 조금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가 산하기관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기가 되면 일정 정도 특별히 지침을 통해서 조심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 김민호 이사
 - ▶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내부적으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규정에 이것을 못박는다는 의미는 이것을 위반하게 되면 해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규정화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 염운섭 이사
 - ▶ 내규로 정해서 어느 정도 규제를 하면 되는데 여기에 정관에.
- 남궁 영 이사장
 - ▶ 그러면 그 5조의1 전체를 삭제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신가요?
- 김민호 이사
 - ▶ 예
- 남궁 영 이사장
 - ▶ 그러면 1,2,3항 전체?
- 박진규 이사
 - ▶ 말씀하신 것은 개정 전 것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 김민호 이사
 - ▶ 예, 개정 전 것도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5조의1 자체를 폐지하는 것을 개정(안)으로 상정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 남궁 영 이사장
 - ▶ 지금 정관 상 복무규정 개정(안)이니까, 규정에 대해서는 우리 이사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아예 이것을 다 삭제를 해 버리면 없어지는거죠?
- 장기수 이사
 - ▶ 예
- 남궁 영 이사장
 - ▶ 그럼 그렇게 할까요?
- 일동
 - ▶ 예
- 윤동현 이사
 - ▶ 그렇지만 임원이나 원장이나 기관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는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직원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을 포함한 관계 규정인 것이고, 관련 규정에 임원이나 기관장의 경우에는 정부 투자, 출자·출연기관, 투자기관에 정치적 의무가

있는 법률조항이 있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이 사항을 개정을 같이 들어가야지, 이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면 법 간의, 다른 법과도 충돌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다시 한 번 고민해서 법률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박세화 이사

- ▶ 제가 확인을 못해봤는데요, 이 복무규정은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거고, 직원에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든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예를 들어 임원들한테는 어떤 지방공기업법이나 그런 데서 어떤 선거운동을, 임원 정도면 공무원과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법에서 이미 이렇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더라도 전혀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장기수 이사

- ▶ 예, 지방공기업법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 박세화 이사

- ▶ 예, 거기에 그런 관련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염운섭 이사

- ▶ 이 조항은 원장이나 공무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윤동현 이사

- ▶ 예, 그렇게 하시죠

○ 남궁영 이사장

- ▶ 이 임원이라고 하면 원장님하고 또 누가?

○ 간사 오원석

- ▶ 여기에 계신 분들입니다.

○ 윤동현 이사

- ▶ 이사

(일동 : 웃음)

○ 남궁영 이사장

- ▶ 아~ 다 비상임이사라 뭐.

○ 윤동현 이사

- ▶ 이사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님 말씀대로 하시죠.

○ 남궁 영 이사장

- ▶ 자, 그러면 기존 5조의1 정치운동의 금지 조항을 전부 삭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 ▶ 다른 이제 문제는 없나요?

○ 박세화 이사

- ▶ 저기 76쪽이요, 18조 병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했을 경우에는 180일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산재일 경우에는 이런 제한을 두는 것은 법 위반이다라고 이것도 삭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민호 이사

- ▶ 아, 예. 맞네요. 삭제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근데 이게 만약에 삭제를 하면 1항, 원 개정 전 현재 개정 전 이것도 삭제를 해야되는지 구분을 해주셔야 되지, 만일 개정 후 내용을 삭제하면 그냥 개정 전은 살아있게 되는데.

○ 김민호 이사

- ▶ 제 생각에는 18조는 개정을 아예 안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 염운섭 이사

- ▶ ~~안해도 원~~ 내용이 괜찮은데요

○ 김민호 이사

- ▶ 병가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 업무외 재해인 것에 부여하는 휴가인거거든요. 업무상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에서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구요, 병가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병가 조항에 산재 개념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남궁 영 이사장

- ▶ 그래서 내버려둬도, 개정 전으로 돌아가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민호 이사

- ▶ 예, 그렇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그러면 개정 후, 개정 자체를 안하는 것으로, 원안으로 개정 전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 김민호 이사

- ▶ 맞물려서 77쪽의 19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상 질병이거든요. 요것도 이제 삭제를 하고, 생리휴가로 바꾸신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게

- 남궁 영 이사장
 - ▶ 이것도 개정 전 내용을 유지하는 겁니까? 아예 다 삭제를 하는 건가요?
- 김민호 이사
 - ▶ 18조를 19조와 연계해서 개정안을 제출하신 것 같은데 19조를 지금 18조의 1로 넣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간사 오원석
 - ▶ 조항번호를 일일이 수정하기가 그래서 아예 전면개정으로 해서 공무상 병가 자체를 생리휴가로 통째로 변경하는 안이었습니다.
- 김민호 이사
 - ▶ 예,
- 남궁 영 이사장
 - ▶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 김민호 이사
 - ▶ 아니, 18조를 19조와 연동하는 개정(안)이 올라온건데 18조의 1항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19조 얘기를 꺼냈던 겁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19조는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 김민호 이사
 - ▶ 19조는 ~~이대로~~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예, 자 다른 의견도
- 간사 오원석
 - ▶ 저한테 질문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질문드려도 괜찮으십니까?
- 남궁 영 이사장
 - ▶ 예
- 간사 오원석
 - ▶ 제가 규정을,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했을 때 병가의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 무급으로 한다는 내용이, 지금 개정(안) 18조2항에 넣어놨습니다. 이 규정은 무방한건지 아니면, 업무상 질병이 아닌 경우에 급여지급에 관한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 현재는
- 김민호 이사
 - ▶ 예, 그럼 기존에는 무급으로 처리하셨나요?

- 간사 오원석
 - ▶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김민호 이사
 - ▶ 유급으로 하셨어요? 그거 불이익 변경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이익변경 절차를 밟으셔야 됩니다.
- 장기수 이사
 - ▶ 법률적으로 이게 맞는건지?
- 김민호 이사
 - ▶ 법률적으로 맞고 안맞고는 없고요, 정하기 나름입니다. 법은 최소기준이니까요. 법에는 병가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자, 그럼 18조2항은 아무 문제 없다는 말씀이죠?
 - ▶ 자, 그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그 복무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18조의 1항은 개정을 않고, 원안, 개정 전 내용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제8부의안건 : 사무관리규정 개정(안)

- 남궁 영 이사장
 - ▶ 자, 다음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 예, 80쪽에 있는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입니다.
진흥원의 세부 사무분장을 현재 이사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원장에게 집중된 결재 업무의 일부를 실·센터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인계인수의 경우 원장은 이사장에게, 회계담당자 및 전보되는 직원은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 82쪽입니다. 팀원의 조퇴 및 외출, 국내출장의 경우 팀장에게 전결권을 부여했으면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자, 요거에 대해서도 의견 있으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가요?
(일동 : 없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없으시면 원안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제9부의안건 : 여비 및 실비보상규정 개정(안)

○ 남궁 영 이사장

- ▶ 자, 다음 여비 및 실비보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 83쪽 여비 및 실비보상규정 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근무지내 출장을 관내출장으로, 근무지외 출장을 관외출장으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관내출장에 관한 내용은 있으나 관외출장에 관한 내용이 없어 이번에 84쪽에 나와 있는 제8조의2처럼 마련하고자 합니다. 동일지역 장기 체재하는 경우 일비와 숙박비 정액의 5분의 1을 감액하는 것에서 일비정액의 10분의 1만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흥원에서는 외부 행사 및 심사위원을 초빙하더라도 낮은 수당 때문에 섭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수당 등을 지급하는 기준표를 참고에서 삭제하고 충청남도공무원교육원의 지급기준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면 조정할 경우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하며, 대신 행정지원실에서 매년 개정 내용을 전 직원에게 공지해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비 및 실비보상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이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죠

○ 박진규 이사

- ▶ 없습니다.

○ 윤동현 이사

- ▶ 없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없으시면 요 여비 및 실비보상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제10부의안건 : 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 남궁 영 이사장

- ▶ 다음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 86쪽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의안설명을 지난 번 이사회까지는 원장께서 담당을 하셨는데요, 원장에서 간사인 행정지원실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진흥원 원장 또한 이사회의 임원으로서 의안설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른 것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칩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의견 있으신가요?

- ▶ 의견 없으시면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제11부의안건 : 감사규정 개정(안)

○ 남궁 영 이사장

- ▶ 다음 감사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 예, 감사규정개정(안)은 하나입니다.

인사규정에서 파면, 해임을 해고로 통일한 것에 따라 연계한 개정(안)입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 이것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이 없으시면 감사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제12부의안건 : 규정제정규정 개정(안)

○ 남궁 영 이사장

- ▶ 다음 마지막으로 규정제정규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오원석

- ▶ 예, 현행 규정 상 제규정의 제 · 개정, 또는 폐지를 해야 되는 규정 중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체 규정을 이사장의 결재 후 이사회에 부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또한,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사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다른 기관들도 규정제정규정이 있던가?

○ 윤동현 이사

▶ 예?

○ 남궁 영 이사장

▶ 다른 기관도 규정제정규정이 있어요?

○ 이재인 감사

▶ 예, 있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있나요?

○ 이재인 감사

▶ 예

○ 남궁 영 이사장

▶ 응

○ 이재인 감사

▶ 절차 같은 것을 규정하는 것이거든요.

○ 남궁 영 이사장

▶ 음, 자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 특별히 없으시죠?

▶ 없으시면 규정제정규정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기타안건 및 마무리 인사

○ 남궁 영 이사장

▶ 자, 그러면 규정안은 이사회에서 12건, 심의안건 12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 남궁 영 이사장

▶ 혹시, 다른 이 12건 부의안건 이외에 혹시 여러 이사님들이 주실 의견이 있으시던가, 뭐 그러시면 말씀하시죠?

○ 일동

▶ 없습니다.

폐회선언 및 마무리

○ 남궁 영 이사장

▶ 특별히 없으시면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 봉 3타



5

2018년 10월 10일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2017년 제1차 임시이사회 의결서

회의일시	2017년 9월 5일 10:30~	회의장소	본원 교육장(3층)
부의안건	부의안건 제 1호 2017년 제2차 사업계획변경 부의안건 제 2호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부의안건 제 3호 정관 개정 부의안건 제 4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 부의안건 제 5호 인사규정 개정 부의안건 제 6호 보수규정 개정 부의안건 제 7호 복무규정 개정 부의안건 제 8호 사무관리규정 개정 부의안건 제 9호 여비 및 실비보상규정 개정 부의안건 제 10호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부의안건 제 11호 감사규정 개정 부의안건 제 12호 규정제정규정 개정		
안건내용	별첨		
의결사항	부의안건 제 1호 2017년 제2차 사업계획변경(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2호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3호 정관 개정(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4호 직제 및 정원규정 개정(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5호 인사규정 개정(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6호 보수규정 개정(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7호 복무규정 개정(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8호 사무관리규정 개정(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9호 여비 및 실비보상규정 개정(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10호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11호 감사규정 개정(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부의안건 제 12호 규정제정규정 개정(안)을 (원안, 일부수정) 의결한다.		
	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		
	2017년 9월 5일		

직위	소속	성명	서명	비고
이사장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남궁영	남궁영	
이사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윤동현	윤동현	
이사	도교육청 체육인성과장	조기성	조기성	
이사	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이영우		
이사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장기수	장기수	
이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원장	이종원	이종원	
이사	前 충청남도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송태화	송태화	
이사	충남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대표	김민호	김민호	
이사	사회복지법인 청로회 대표이사 (청로일사여자청소년쉼터 시설장)	이철이	이철이	
이사	호서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국제리더십센터장)	박진규	박진규	
이사	선문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손진희	손진희	
이사	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강인영	강인영	
감사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팀장	이재인	이재인	
감사	노문섭세무회계사무소	노문섭	노문섭	

2017년 제 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017. 9. 5.(화). 10:30 ~

2. 회의장소 : 본원 3층 교육장

3. 출석상황

재 적 임 원			출 석 임 원		
계	이 사	감 사	계	이 사	감 사
14	12	2	13	11	2

※ 불참임원 : 1명(이영우 충청남도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5. 의장 : 남궁 영(충청남도 행정부지사)

6. 기록자 : 남 혜진(행정지원실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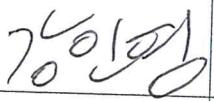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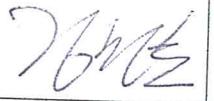
의장이 2017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회 선언에 이어 제안자의 제안설명으로 심의하며, 별첨과 같이 토의 및 의결하고 산회 하다.

별첨 : 이사회 의결서 1부

2017년 9월 5일

재단법인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위의 회의록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직 위	소 속	성 명	서명	비 고
이 사	이인법률사무소 변호사	강 인 영		
이 사	충남청소년노동인권 네트워크 대표	김 민 호		
김 사	천안아산회계사회 회장 공인회계사사무소 대표	노 문 섭		

* 제1차 임시이사회(2017.9.5)시 회의록 확인여부를 위의 3명에게 지정함